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용 요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양 수단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복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형태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용요금 격차 심화 및 지원규모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

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시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관련 사항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어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저와 동 조례를 함께 발의했던 동료 의원들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동안 장애인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